

항일변호사 허헌의 ‘나눔’의 일상과 형사변호공동연구회 - 식민지 사회와 유교문화의 재코드화*

변 은 진**

머리말

I. 허헌의 지식 습득과정과 나눔의 일상

1. 전통적인 한학 및 유교문화의 습득
2. 부의 축적과 나눔의 일상화

II. 나눔의 지식·경제 공동체 : 형사변호공동연구회

1. ‘나눔의 지식·경제 공동체’ 구상의 배경
2.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설립과 활동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변호사 허헌을 통해 식민지 사회에서 ‘나눔’의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허헌은 일제강점기에 ‘인권변호사·항일변호사·사상변호사’의 대명사로 일컬어 지던 인물이다. 1885년 함경도 산간벽촌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를 목표로 한학과 유교문화를 습득한 뒤 근대적인 신학문을 공부한 허헌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도덕률과 근대적인 서구문화 및 기독교의 도덕률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개인의 부의 축적과 ‘나눔’을 철저하게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실천한 데에는, 전자 즉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습득과 일제의 강점이라는 상황이 컸던 것 같다. 그는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청년교육과 각종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bdbdej@naver.com)

기부,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무료변론과 옥바라지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와 같이 '나눔'의 일상을 지속하면서, 그는 이를 식민지 조선의 합법영역 내에서 근대적인 형태로 재현해보려 했다. 그 결과 '나눔'의 지식·경제 공동체라 할 수 있는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923년 초 형사변호공동연구회가 결성된 배경은 첫째, 1920년대 항일운동의 정세변화로 인해 '사상사건'과 '사상범'이 늘어난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둘째, 일제당국의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항일운동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경제적 지원에 있었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활동 역시 철저히 이 두 측면에 집중되었다. 첫 번째 필요에 따라 '나눔의 지식공동체 - 공동의 법리 연구와 대응'을, 두 번째 필요에 따라 '나눔의 경제공동체 - 무료변론과 경제적 지원'을 구체화하여 활동했다.

주제어: 허헌, 나눔, 형사변호공동연구회(형사공동연구회), 항일변호사, 인권변호사, 사상변호사, 무료변론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나눔, 기부, 재능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등의 단어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나 사회 차원의 분배와 복지가 누구나 동의할 만큼 이상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다층의 인식과 실천은 그것을 보충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개인의 행위가 공공의 영역으로 승화되어 공공성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 한 지점이기도 하다. 학자들은 이런 전통을 나람의 역사 속에서 찾기도 하고 외래 사상의 이입에서 찾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주로 전통적인 유학(儒學) 내지 유교문화가 갖고 있는 논리와 덕목에 천착해왔고, 후자의 경우 주로 서구 기독교 사상의 전래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래사회를 논하곤 해왔

다.¹⁾ 사실 이는 어느 한 측면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경제적 이념 장치로서 『주역(周易)』의 '손상익하(損上益下)'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도 했다.²⁾ 이는 유교 중심 사회에서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손상익하는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왕토(王土) 사상에 기초한 성왕(聖王)의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조선시대에 백성의 부세(賦稅)를 감면해줄 때 종종 거론되어왔다. 17세기까지는 국왕의 재정 권한을 견제하는 논리로서 신하들이 주도하였으나, 18세기 생산력 증대 이후부터는 정조(正祖)를 비롯한 국왕이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한다.³⁾

훌륭한 왕의 국가를 전제로 한 '손상익하'의 강조와 맞물려, 18세기 이후 양반사회의 문화나 인간형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원리적으로 유교에서의 도(道)와 돈은 가치 지향의 면에서 양립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부즉 정도(正道)나 부도(不道)냐를 따지게 되고, 정도를 통한 부자만이 이상적인 부자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 이상적인 부는 그 혜택이 남에게까지 미치는 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즉 '나눔'의 인식이 존재해왔다. 근대사

1) 대표적으로 忠愍라는 유교적 덕목을 서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비교하여 충서의 현대적 의미를 찾고 대동사회를 추구한 김일환의 「현대사회와 유교의 사회적 덕목 - 충서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중심으로」(『유교사상문화연구』 제32호, 2008), 조선시대 선비정신이나 유교적 전통을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빗대어 그 현대적 전승을 추구한 제정관의 「한국전통의 선비정신과 현대적 전승: 조선시대를 중심으로」(『윤리연구』 제72호, 2009), 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기독교 전래에 따른 나눔 인식의 변화 양상을 다룬 서신혜의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기독교사회윤리』 제26호, 2013) 등이 있다.

2) 송양섭, 「18세기 '公' 담론의 구조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 『역사와현실』 제93호, 2014, 44-53쪽;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의 이념』, 태학사, 2015, 38-47쪽.

3) 최주희, 「18세기 국가재정의 公共性 재고」, 『朝鮮時代史學報』 제76호, 2016, 219쪽.

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유교적 도를 알고 추구하던 양반이 직접 노동하는 성실한 생활인으로 변모한 사례를 들면서 ‘새로운 인물형의 등장’을 언급하기도 했다.⁴⁾ 1830~40년대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설화집 『계서야담(溪西野談)』 속 양반 최생(崔生)의 귀향 사례를 다룬 것으로서, 10년 만에 거부(巨富)가 된 최생은 당초 약속대로 자신의 노비들에게 100냥씩 나눠주어 부유하게 살도록 했다고 한다.⁵⁾ 또 ‘나눔이 곧 수성(守成)’임을 실천했던 거부 변승업(卞承業)의 삶이나 ‘경주 최 부잣집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⁶⁾ 구휼이나 기부는 부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부를 유지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국가적 차원의 손상익하만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일상적인 나눔 문화 역시 조선후기 유교사회를 지탱하는 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의 금욕(禁慾)과 절제(節制)를 전제로 자선(慈善, Charity)을 강조한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부터 역사적으로 나눔의 문화가 있어왔음은 분명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이 알려지기 전부터임도 분명하다. 사실 ‘귀한 신분에는 책임이 따름’을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 용어 자체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귀족의 지위와 권력을 전제로 하는 말”이었다. 다시 말해서 중세 신분제 사회에서 지배층의

4) 서신혜, 『한국 전통의 돈의 문화사, 나눔의 문화사』, 집문당, 2015, 219-220쪽. 科擧를 통한 立身揚名을 꿈꾸던 양반 최생이 심각한 가난에 처하자 『孟子』離婁編의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음은 불효의 한 가지라.”는 구절을 재해석하고 시골로 들어가 노비들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짓는 생활인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5) 위의 책, 278쪽.

6) 최 부잣집의 가훈은 “過客을 후하게 대접하라, 흥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망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였다고 알려져 있다.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는 배타적인 방식이었던 것이다. '귀족적, 봉건적, 위계적, 전통적 윤리기준'에 기초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덕목은 오늘날의 '시민적, 민주적, 평등적, 현대적 윤리기준'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⁷⁾ 나눔의 주체가 귀족이나 국왕이냐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손상익하를 중심으로 한 유교사회의 윤리기준이나 나눔관 역시 신분적·배타적 성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시기 신문·잡지나 문헌들을 보면, 이 시기에 이미 오늘날 이상으로 기부나 나눔의 문화가 행해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계몽'과 '애국', '부국강병' 등의 명분 아래 경제나 교육면에서 '뜻 있는' 인사들에 의한 수많은 기부와 모금이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전 국민의 자발적 모금에 기초한 국채보상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나눔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명망가나 지식인은 더 많아졌다. 유교 국가, 유교사회의 나눔의 전통은 민본과 민권이 확대되는 근대사회의 지식 기반으로 이어지면서 재코드화 되어온 면이 있었다. 18~19세기 유교 문화의 대중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변이 더욱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돈과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면적으로 변화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률이나 가치관 형성과 맞물려서 그 성격이 변화되고 확장되어갔다.

개인적 차원에서 나눔의 일상화는 유교국가의 덕목인 손상익하를 실현할 주체 즉 왕과 국가가 사라진 일제강점기 들어 더욱 확산되었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주로 19세기 중후반에 한학과 유학의 지식을 습득한 지식층

7)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아카넷, 2016, 272-294쪽 참조.

이 식민지 조선사회의 주도층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격적 완성과 인의(仁義)의 실천을 지향하는 자신의 유교적 가치관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로의 전환과 일제의 침탈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가치관과 양립되었던 부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레 변화해갔다. 한말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부의 축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었고, ‘경제 방면의 실력양성’은 사회진보와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나누는 방법이 정도(正道)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다. 거의 사라진 국가, 이미 사라진 국가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개인이 부를 축적하고 나누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 중요해졌고 그 범위도 넓어졌다. 반면 일제에 협력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 즉 부도(不道)에 의한 것은 죄악시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직접 이를 단죄하기도 했고, 군자금 모집 방법에서 보이듯이 ‘강탈’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를 나누어 올바른 곳에 쓰이게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부의 축적과 나눔이 분배나 복지의 문제로 거론될 수 없었던 식민지 사회에서 ‘뜻 있는’ 개인의 부는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여기는 의식도 생겨났다. 개인의 인격 완성이라는 도덕적인 문제는 바로 이 사회적 실현 속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나누는 것 역시 사회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뜻 있는’ 인사들은 사재(私財)를 털어서라도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 각종 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 등의 이

를 아래 조직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은 청년들은 다시 자신의 지식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자신의 부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재생산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항일변호사이자 민족운동가로 알려진 허헌(許憲, 1885~1951)이라는 인물의 '나눔'의 일상을 통해, 그리고 그가 지식과 경제의 나눔 문제를 근대사회의 법적 구조 속에서 공동으로 풀어내보려 시도한 형사변호공동연구회(刑事辯護共同研究會)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⁸⁾ 오늘날 인권변호사의 효시로 평가되는 공인(誦人) 허헌은 일제강점기에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1888~1964), 애산(愛山) 이인(李仁, 1896~1979)과 함께 '3인'으로 불리면서 '항일변호사, 무료변호사, 사상변호사'의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⁹⁾ 또 일제당국의 항일운동 탄압이 심해진 1929년에는 신간회(新幹會) 위원장까지 맡아 정치운동을 전개하다가 투옥되어 결국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남조선노동당 위원장까지 하다가 월북

8) 허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월북한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서인지 몰라도 석박사 학위논문도 없다. 하지만 식민지 당대에도 지금도 허헌은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관련 연구서로는 심지연의 『허헌 연구』(역사비평사, 1994)가 유일할데, 이 책은 8.15 이후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외에는 영문학자인 둘째 딸 허근옥의 『민족변호사 허헌』(지혜네, 2001)이 있다. 최근 북한의 장남 허영욱이 『나의 아버지 허헌』(평양출판사, 2015)을 출판했는데, 이 역시 8.15 이전의 행적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변호사로서 허헌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 한인섭의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허헌·김병로·이인과 항일재판투쟁』(경인문화사, 2012), 변은진의 「誦人 許憲의 성장과정과 한말 변론활동 연구」(『사학연구』 제130호, 2018)와 「일제강점기 허헌의 항일변론활동 연구」(『애산학보』 제47호, 2020) 등이 있다. 이 외에 최근 국문학계에서 허헌의 세계일주 여행에 주목하여 나온 약간의 연구가 있으나 생략한다.

9) '항일변호사, 무료변호사, 사상변호사'는 식민지 법정에서 재판투쟁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가들을 변론하고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원했던 조선인 변호사들을 말한다. 오늘날 인권변호사의 역사적 기원은 식민지 상황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부터 보는 게 일반적이다(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한국인권변론사 - 가시발길을 선택한 변호사들』, 두레, 2003, 23-24쪽).

(越北)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말에 과거급제(科擧及第)를 목표로 전통 유학을 공부한 그의 지식 습득 과정과 여러 활동들은, 이상에서 언급했던 나눔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잘 보여준다.

I. 허헌의 지식 습득과정과 나눔의 일상

1. 전통적인 한학 및 유교문화의 습득

허헌은 1885년 음력 6월 11일 함경북도 명천군의 칠보산(七寶山) 자락 아래서 태어났다. 한창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던 시기였지만 그가 유년시절을 보낸 이곳은 여전히 문명개화와는 거리가 먼 산간벽촌이었다. 부친 허추(許抽)는 과거를 거쳐 진사(進士)로 출사한 전통적인 유생이자 조선왕조의 관리였다.¹⁰⁾ 일제강점기 잡지 등에서 허헌의 성향을 언급하면서 종종 ‘선비다운’, ‘샌님 같은’, ‘한림학사(翰林學士) 모양으로’ 등의 수식어가 붙곤 한 것은¹¹⁾ 바로 이러한 집안환경과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어린 시절 허헌은 대개의 양반집 도련님들처럼 기개를 갖춘 선비의 길을 꿈꿨고, 한학과 유학을 공부해 과거에 급제하여 관제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했다. 다섯 살이 되던 1889년경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서당에 다니면서, 초시(初試)를 한 훈장 윤창훈(尹昌訓)에게 『천자문』을 배우며 글공부를 시작했다. 이어서 『계몽편』, 『명심보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 등을 차례로 공부했다고 한다. 나중에 상경하여 신학문을

10) 변은진, 「공인 허헌의 성장과정과 한말 변론활동 연구」, 179-184쪽 참조. 이하 허헌의 초기 성장과정에 대한 서술은 주로 이 논문의 184~201쪽을 중심으로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11) 「交叉點」, 『三千里』 제17호, 1931.7; 柳光烈, 「許憲論」(「登場한 二人物」중에서), 『三千里』 제4권 8호, 1932.8; 「天下大小人物評論會」, 『三千里』 제8권 1호, 1936.1.

공부하면서도 고향에 갈 때마다 스승을 찾았고, 1931년 윤창훈이 사망하자 직접 비문(碑文)을 지어 성문 밖에 송덕비를 세울 정도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컸다. 일곱 살 되던 1891년경부터는 향교(鄕校)로 진학하여 과거시험을 준비했으며, 어린 나이에 향교에서 실시한 소과 초시에 급제하였다. 이어서 소과 복시(覆試)를 거쳐 성균관에 진학하여 관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매진하였다.

1894년 말경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주한 뒤에도 이듬해에 치러질 식년시(式年試)의 소과 복시 준비를 계속하였다. 그해에 갑오개혁으로 공식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었는데, 함경도 오지에 있던 허헌은 물론 부친조차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한참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친은 아들에게 서양식 관립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허헌은 1895년 8월 설립된 재동소학교(齎洞小學校) 심상과와 고등과를 거쳐, 1900년 문을 연 관립중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서울에서 관립학교에 다니면서 허헌은 자연스럽게 청과 일본에 압박받던 조선의 상황이나 개혁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해도 허헌은 이 시기에 여전히 어려서부터 배워온 한학과 유학, 그리고 유교문화에 자신의 기본적인 소양을 두고 활동하였다. 10대 중반인 1899년에 황국협회(皇國協會)에서 발간한 『시사총보(時事叢報)』에 장지연(張志淵) 등과 함께 한시(漢詩)를 싣는 데서도 알 수 있다.¹²⁾ 이때부터 허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러한 활동을 즐겼던 것 같다. 일제강점기에도 언론사의 신년인사 등에 종종 한시를 지어 보내곤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관립중학교 입학 즈음부터 허헌은 부친의 건강 악화로 혼자 서울에 남

1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2 - 국권수호운동Ⅱ』, 1987, IV-8-5 참조.

아 오궁동(五宮洞) 이용익(李容翊) 집 사랑채에 기거하면서, 동갑내기 손주 이종호(李鍾浩) 등과 교류하며 지냈다. 그리고 얼마 뒤 부친 사망 직전에 여비까지 챙겨서 명천으로 보내준 이용익 덕분에 허헌은 부친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¹³⁾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상례(喪禮)에 따라 장남으로서 상주(喪主) 노릇을 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奠)을 올리고 상식(上食)을 올린 뒤 장례를 치르고 재덕산(在德山) 조부의 묘 옆에 부친을 모셨다.

자식 된 도리로 “3년 동안 봉상(奉喪)을 해야 한다”는 종조부의 권유로 부친의 삼년상을 치르던 중,¹⁴⁾ 1901년 열일곱의 나이에 호주가 되었다.¹⁵⁾ 부친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살아온 허헌은 이때부터 호주로서의 무게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상당히 느꼈던 것 같다.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다.¹⁶⁾ 어머니는 다시 서울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권유했으나, 이를 그대로 받들기에는 생각과 갈등이 많은 10대 중후반의 청년이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잠시 광산의 서기로도 일했으나, 결국은 곧바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와 종조부의 권유로, 부친이 생전에 집안에서 정해둔 함흥의 토호(土豪) 경주정씨(慶州鄭氏) 집안의 정보영(鄭寶榮, 兢慈로 개명)과 혼례를 올렸다.

이와 같이 부친 사망 뒤 허헌의 행보를 보면 유교문화를 생활화한 당시

13) 9세인 1894년에 양친을 여의어 홀지에 고아가 되었다는 서술도 있는데(심지연, 『허헌연구』, 1994, 16쪽; 허근욱, 『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 제28호, 213쪽), 이는 잘못이다.

14) 柳光烈, 「許憲論」, 38쪽; 「緣分泰平記(下)」, 『野談』 제4권 7호, 1938.7, 145쪽.

15) 허헌의 호적에는 “호주 허추 사망으로 인해 서기 1901년 4월 11일 호주가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허근욱, 『민족변호사 허헌』, 20쪽의 ‘허헌 선생 호적’).

16) 차녀 허근욱은 허헌의 동생을 許璵으로 기록했는데(위의 책, 394쪽), 장남 허영욱은 허원으로 기록하고 있다(허영욱, 『나의 아버지 허헌』, 9쪽).

의 일반적인 관습의 과정을 자연스레 밟고 있으며, 스스로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모셨다. 당시 양반 집안이 대개 그러했듯이, 허헌 역시 어릴 적 취첩(娶妾)을 한 부친 때문에 모친이 마음고생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그에게 취첩하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허헌은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한다. 집안끼리의 혼담으로 결혼한 허헌은 일제강점기 잡지사 인터뷰 등에서, 자신은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교제-연애-결혼'이 아니라 '결혼-연애-지속'이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920년대 후반 무렵 항일운동에 몸담으면서 신여성 유덕희(柳德禧, 柳文植)를 만나 교제했는데도, 끝까지 고지식하게 연애를 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¹⁷⁾ 그러다가 1930년대 중반 무렵 정보영이 사망한 뒤 유덕희와 재혼하고 1937년 1월 2일 자로 혼인신고도 했다.¹⁸⁾

정보영과 결혼한 뒤 1901년 가을 무렵 허헌은 서울 광화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한 집안의 호주이자 가장이 된 그가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1900년대에 그는 지계아문, 규장각, 법무아문 등에서 일하며 생업과 학업을 병행했다. 야학에서 일본어와 영어를 공부하다가, 1903년 2년제인 한성외국어학교와 독일어학교(德語學校)에 입학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뒤 조선이 처한 현실에 좀 더 눈을 떴고, 외국어와 국제법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1905년 4월

17) 『緣分泰平記(下)』, 145-146쪽.

18) 심지연의 『허헌 연구』에는 허헌과 유덕희가 1929년 7월 1일에 재혼했다고 했는데(18쪽), 이는 잘못된 것이다. 부인 정보영이 남편과 딸, 사위까지 모두 투옥된 상황에서 잡지에 글을 남긴 데서도 알 수 있다[鄭寶榮(許憲 夫人), 「男便을 獄中에 보내고, 嚴冬바람을 압두고」, 『三千里』 제3권 11호, 1931.11]. 한창 신간회운동에 여념이 없던 시기 허헌이 재혼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잡지에서도 정보영과 '결혼-연애-지속'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재혼한 유덕희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에 개교한 보성전문학교 법률학전문과에 입학했고, 1907년 2월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한편 이 시기 허헌이 사회적 불의에는 참지 못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해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만 18세인 1903년 2월에 『황성신문』에 직접 투고한 글이다.¹⁹⁾ 일본 은행권이 조선을 침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정부가 전혀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민족 지라 여겨지던 『황성신문』조차 제대로 사실보도나 논평을 하고 있지 않자, 독자의 입장에서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다.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된 이 「기서(奇書)」는 한시 등의 전통적인 글쓰기를 제외한 최초의 공개적인 글로 확인된다.

2. 부의 축적과 나눔의 일상화

1907년 2월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허헌은 그해 6월 24일 대한제국 법부(法部)에서 시행한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²⁰⁾ 8월 말경 동기생 옥동규(玉東奎)와 함께 광화문 근처에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²¹⁾ 첫 광고를 게재한 당일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변호사 옥동규, 허헌 양씨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는데, 법리(法理)의 해석이 명쾌하고 사

19) 許憲, 「奇書」, 『皇城新聞』 1903.2.14.

20) 『高宗實錄』 1907.7.1; 『大韓每日申報』 1907.7.2.; 『大韓帝國官報』 1907.7.4. 심지연, 허근옥, 이이화, 박원순 등 기존 연구들은 허헌이 1907년 普專 졸업 후 明治大學으로 유학을 갔다가 1908년 7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법학계의 논문들은 바르게 되어 있는 편이며, 허헌을 일제강점기와 1947~49년에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 출신들 모두의 ‘아버지뻘’이라 서술하고 있다(김두식, 『법률가들』, 창비, 2018, 109쪽).

21) 『大韓帝國官報』 1907.8.31. “9품 허헌과 6품 옥동규가 변호사법 제2조 제2항 자격에 해당하기로 변호사를 인가하고 명부에 기록하였기에 이에 공고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허헌보다 17세나 위인 옥동규는 평양 출신으로, 1906년부터 한성재판소 검사이자 법관양성소장을 지낸 李冕宇의 변호사사무소에서 일한 실무 경험이 있어서 적임자였다고 할 수 있다(김효전, 「허헌과 변호사 징계」,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0, 94쪽).

무의 처리가 신속하므로 인민이 그 억울함을 신장하고자 하여 날로 더욱 왕성”할 것이라 보도했다.²²⁾

원래 국제법에 대한 관심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을사늑약 이후 일제강점의 과정을 거치면서 허헌은 점차 조선민중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는 ‘인권변호사’로서의 임무를 자각해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진로를 재판소로 정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개업 후 허헌은 높은 승소율을 보임으로써 제법 ‘잘 나가는’ 변호사로 자리잡아갔다. 예나 지금이나 변호사는 비교적 일정한 수입과 사회적 명망성이 보장되는 직업이었고, 인기 있는 경우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인권변호사로 정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허헌은 결국 유명한 ‘하미전(下米塵) 사건’²³⁾ 변론을 계기로 개업한지 불과 5개월 만에 “패설모매(悖說侮罵)에 거조해당(舉措駭堂)”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직 제명’이라는 징계를 당하고 말았다.²⁴⁾ 이에 대해 당시 언론에서는 담당판사 송진옥(宋振玉)과 법부대신 조중응(趙重應)을 비난하면서, “한국조정(韓廷)의 법관은 사법(司法) 아니라 사법(私法)인즉, 애달프다, 이 인민이 어찌 버터낼 것인가

22) 「辯護開設」, 『大韓每日申報』 1907.8.27.

23) ‘변호사 허헌 사건’으로 비화된 이 사건은 “당시 한성의 아동 줄개(走卒)라도 알 만한” 유명한 사건이었으며(柳光烈, 「許憲論」, 39쪽), 오늘날 법학계에도 “불의에 항거한 허헌 변호사의 기개를 보여주는 사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귀감으로서 기억할 만한 일”로(손경찬, 「한국 변호사제도의 기원과 의의」, 『법학논고』 제33호, 2016, 314쪽 ; 김효전, 「허헌과 변호사 징계」, 98쪽) 평가한다. ‘하미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은진, 「공인 허헌의 성장과정과 한말 변론활동 연구」, 207-214쪽 참조.

24) ‘변호사 허헌이 법관에게 悖說侮罵에 舉措駭堂이라 하기로 변호사법 제33조에 의하여本月 25일에 제명 징계함’(『大韓帝國官報』 1908.1.30.). 패설모매란 ‘사리에 어긋나게 말하고 업신여겨 꾸짖음’, 거조해당이란 ‘행동거지가 소란스럽고 건방짐’ 정도로 해석된다.

하여 여론이 비등하더라.”라고 보도하기도 했다.²⁵⁾

이렇게 ‘하미전 사건과 변호사직 제명’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허헌은 인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변호사의 대명사로 인정받게 되었다. 반면 사욕(私慾)만 채우는 법관들에 대해 강한 환멸을 느끼면서 변호사로서 ‘나눔’의 실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당대의 다른 지식인들처럼 허헌 역시 서북학회(西北學會) 등 ‘애국계몽’ 단체에서도 활동했다.

전통적인 유학을 공부한 허헌이 서구의 근대적인 법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최초의 법률·정치·경제 등의 종합지로 평가되는 『법정학계(法政學界)』에 1907년 발표한 아래 논설에서 잘 드러난다. 「민이 알아야만 하는 법률(爲民者 | 不可不知法律)」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그의 최초의 본격적인 논설로 보인다.

무릇 법률이라는 전체 개념은 유독 법률을 講究하는 자에만 한정할 뿐 아니라 一國의 臣民된 이상은 반드시 그 국법의 大體를 통달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 우리의 公私 생활은 다 법률이 通御하는 바이다. 따라서 생명·신체·자유·영예 및 재산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함을 얻기 시작 하니, 바라건대 일국의 臣民 된 자는 자국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은 천지간에 만물이 物理 상의 원칙을 벗어나지 못함과 같아서, (중략) 국가가 있고 人民이 있으면 법률이 없을 수 없다. 법률이 있으면 人民 된 자는 강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만일 우리가 이를 포기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자기의 고유한 권리를 상실할 뿐 아니라 자국의 권리를 타락하여 家國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리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사상을 뇌리에 瀑注하여 잠시라도 법률의 개념을 잃지 말고 각자의 고유한 자유를 잃지 않으면 국권의 회복과 인권의 신장을 머지않아 기대할 지로다.²⁶⁾

25) 「司法私法」, 『大韓每日申報』 1908.1.31.

26) 許憲, 「爲民者 | 不可不知法律」, 『法政學界』 제6호, 普專校友會, 1907.10, 1-4쪽.

국한문 혼용체인 이 글의 개념은 대부분 전통적인 유학에 의존하고 있지만, 내용은 근대 국민국가에서 법의 의미, 개인과 국가의 관계, 인민이 법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국권회복과 인권신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글의 앞부분에서는 '민(民)'을 '신민(臣民)'으로 표현하다가 뒷부분에서는 '인민(人民)'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논설에 자연스런 설득력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 같기도 하다.

한편 허헌이 신학문과 근대문명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은, 부친 사망 후 자신을 거두어준 이용익이었다.²⁷⁾ 잘 알려져 있다시피 1890년대 후반 이래 이용익은 부와 권력을 모두 장악한 인물이 되었는데도, 당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탐욕스럽다거나 부정한 축재를 했다고 평가받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정치적으로 이용익을 비난했던 황현(黃玑)의 『매천야록』에서조차 '청렴'한 인물로 묘사했을 정도였다.²⁸⁾ 또한 당시 이용익의 집에는 이갑(李甲)이나 이동휘(李東輝) 등 다수의 항일 인사들이 드나들고 있어서, 이들 과도 교류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허헌은 부를 축적하고 나누는 '정당한' 방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었고 '나눔의 문화' 역시 자연스레 익숙해질 수 있었다.

허헌이 나눔의 문화를 체화한 계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조선후기 이래 유교문화의 대중화 과정, 한말의 격변기와 일제의 침탈과정을 거치면서 '뜻 있는' 개인이 지식이나 부를 축적하고 이를 나누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

27) 같은 명천 출신이기는 해도 이용익은 평범한 서민 집안 출신으로 襁負商을 거쳐 함남 端川에서 금광을 개발하여 巨富가 된 인물이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한 대한제국정부는 1897년 內藏院卿에 임명하였고, 이후 度支部 대신까지 지내면서 열악한 황실 재정을 총괄하였다.

28)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100년사』I,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19쪽.

다. 청년세대를 교육하는 일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전통적인 유학을 공부한 허헌이 다시금 외국어와 국제법 공부에 뜻을 두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돌아올 때의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그가 청진항(淸津港)을 거쳐 귀향하던 도중에 부친의 지인인 ‘부령 강씨’를²⁹⁾ 찾아갔는데, 신학문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말을 들은 강씨는 선뜻 당나귀 두 마리와 엽전 한 자루를 학자금으로 내줬다고 한다.

이처럼 ‘씩이 보이는 청년에게 투자하는 일’은 비단 개화지식인이나 계몽운동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배움이라는 명분과 의지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다. 부친이 사망한 뒤 가세(家勢)가 다소 기울었다고는 해도 허헌의 집안이 순식간에 그렇게 빈곤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씨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인의 자제에게 학자금을 희사하고 앞의 이용익 역시 그러했다. 그리고 허헌 역시 언제까지 이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전혀 갖지 않고 선뜻 받아왔다.

변호사직 제명 후 1908년 4월경 일본 메이지대학으로 유학을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건강도 악화되고 학자금마저 떨어지자 허헌은 친구 이종호 앞으로 400~500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이갑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이갑은 “그만한 돈을 이종호 군에게까지 말할 것 있느냐. 내게 있어 보내니 받고, 아무 근심 말고 공부에만 착심(着心)하오.”라는 답신과 함께 400원을 보내줬다고 한다.³⁰⁾ 이 일화에서도 한말의 ‘뜻 있는’ 인사들이 청년의 ‘배움’을 위해서라면 계몽운

29) 허근욱, 『민족변호사 허헌』, 53·89쪽. 현재 ‘부령 강씨’는 확인되지 않는다. 허근욱의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전후 북한 관료를 지내다가 모스크바로 망명한 姜尙昊 집안이라고 한다.

30) 許憲, 「交友錄」, 『三千里』 제7권 7호, 1935.8, 71쪽. 당시 이종호는 전국을 돌며 활동하고 있어서 이갑에게 전달을 요청한 것이었다.

동 차원의 교육 사업만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언제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명개화와 국권회복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내 자식 남의 자식을 가리지 않고 사재를 털어서 큰돈을 쾌척하는 일을 보람으로 느꼈던 유지들, 또 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조선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요즘보다 더 '기부의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던 시절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으며, 이를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배움이 단지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다. 청년들 역시 부와 지식을 나누는 문화와 그 사회적 책임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그러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예컨대 유학시절 허헌은 위와 같은 이갑의 호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고, 결국 귀국 후 이갑을 도와 서북학회 부총무를 맡아 수해(水害) 등 각종 구휼금 모집에 몰두했다.

'청년에게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장차 미래에 발생할 공공의 이익과 그것이 가져다줄 가치에 대한 특정한 사회적 함의로 해석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청년들 스스로도 타인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분위기 역시 이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국가적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일제강점 이후 청년들이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에 뛰어들 수 있는 마음가짐도 생겨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 또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 교육 사업 등에 투자하는

풍습이 지속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다.

1909년 3월을 마지막으로 허헌은 1년간의 유학생생활을 접고 귀국했다.³¹⁾ 변호사 일을 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잠시 이종호가 초대교장으로 있던 서북협성학교(西北協成學校)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그해 5월 17일 그의 변호사직 제명 징계가 풀렸다.³²⁾ 그의 청구로 5월 27일 법부의 변호사명부에 등재되었으며, 6월 8일에는 경성지방법판소 검사국에서 청구하여 변호사명부에 등록되었다.³³⁾ 1908년 1월 25일 부로 제명된 지 대략 1년 4개월만이였다. 다시 변호사로 돌아온 허헌은 곧바로 서울 청진동에 단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이갑, 이종호 등 지인들의 중국 망명과 일제 강점이라는 충격을 접했다. 상심한 허헌은 1910년 9월 중순경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들과 함께 함경도로 낙향하였다. 가던 길에 원산(元山)에서 우연히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기독교를 선전하던 이동휘를 만나 그의 전도로 기독교에 몸담기도 했지만, 깊이 빠져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한동안 고향에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육활동에 전념했다. 변호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거의 교육 사업에 투자했고, 나머지 일부는 각종 구호사업에 성금을 기부하는 데 사용했다. 전국 어디서나 학교 재정이 열악하여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거나 어떤 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계속

31) 이미 일제당국의 '要視察人'으로 지목된 허헌의 귀국과정은 「要視察韓國人之來神二就テ[柳春吉・李月松・許兢人の神戸來着]」(1909.4.5., 兵庫縣知事→外務大臣), 『要視察韓國人舉動 3』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32) 『大韓帝國官報』 1909.5.20.

33) 『大韓帝國官報』 1909.5.29, 6.17. 『황성신문』은 허헌의 복직에 대해 “변호사 허헌 씨는 보성전문학교 졸업생으로 변호에 임하여 인민소송사건에 법률상 正理에 근거하여 유력가의 강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免任이 됨에 일반 사회가 그 억울함을 일컫더니, 氏가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어와 법학을 다시 연구하고 이번에 귀국하여 변호의 復任을 얻었다더라.”라고 보도했다(『許氏復任』, 『皇城新聞』 1909.5.25.).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슴없이 사재를 털어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지들이 망명하고 낙향을 결심한 순간에도 그의 서울 생활에서 확인되는 것은 교육 사업에 '기부'를 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³⁴⁾ 또 어디든 가뭄이나 수해가 발생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자주 성금을 내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낙향 후 허헌은 먼저 함흥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이후 전주·군산 등지에도 사무실을 개업했다. 그의 성격상 아마도 규모가 큰 변론 사건을 의뢰받으면 직접 그곳에 내려가 한동안 거주하면서 몰두하다 보니 사무실 개업으로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 한 예로 전북 부안(扶安) 출신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운동가인 김철수(金綴洙)의 부친 김영구(金永九)의 소송을 맡은 적이 있었다. 그 집안은 부안의 소지주로서 쌀 위탁판매업도 하고 있었는데, 지역의 거부 김성수(金性洙) 집안과 토지 문제로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김영구가 서울에서 데려온 변호사가 바로 허헌이었다. 허헌에 대한 김영구의 신뢰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다. 당시 신학문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김철수가 허헌을 찾아와 자신을 상급학교에 보내도록 아버지를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정도였으니 알만하다.³⁵⁾ 어쨌든 이렇게 하여 허헌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다시 청년교육 등에 나누는 일상을 계속하였음은 다음 자료에서도 알

34) 단천 출신으로 협성학교에 許道成이라는 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퇴학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학비를 부담했다는 기사(『大韓每日申報』 1910.4.20.), 경북 안동의 協東學校에 기부했다는 기사(『皇城新聞』 1910.8.26.) 등에서 알 수 있다.

35) 일찍이 허헌과 김철수가 맺은 인연은 훗날 김철수 중심의 사회혁명당과 이동휘 중심의 고려공산당(상해파)의 연결고리로도 작용했다고 한다. 아마도 1921년 10월 국제변호사대회에 참가차 베이징을 방문한 허헌이 金立에게서 통지문을 건네받아 김철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이균영, 「김철수 친필유고(1970~1973년경 작성)」, 『역사비평』 제7호, 1989, 350쪽; 李賢周, 2000, 「社會革命黨과 '上海派 內地部'에 관한 연구(1920~1922)」, 『한국학연구』 제11호, 174~175쪽).

수 있다.

이 씨(이동휘-필자) 역시 망명을 하며 허 씨를 여러 차례 위로한 결과 그는 전주·군산·함흥 등에 다시 변호사 문패를 걸게 되고 한때는 수만 원의 돈도 벌었으나, 금전에 淡泊한 씨는 모두 개인적으로 청년교육비 보조에 썼다는 것은 씨에게 숨어 있는 한 美談이다.³⁶⁾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호사 허헌의 명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른바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3.1운동 주역들에 대한 변호인단에 포함된 허헌은 집요하게 일본 법 체계의 논리적 허점을 연구함으로써, 결국 그의 ‘공소불수리(控所不受理) 신청’이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³⁷⁾ 조선인이 일제 사법당국에 뭔가 크게 통쾌한 일격을 가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인권변호사’ 허헌은 이제 ‘항일변호사’의 최고봉에 올랐고, 3.1운동 이후 늘어나는 ‘사상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사상변호사’의 최중심에 서게 되었다.

사실상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허헌의 경제적 처지는 상당히 넉넉한 편이었다. 그가 일제강점기 내내 학교 설립을 비롯해 여러 사회활동에 기부를 하거나 성금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큼의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허헌이라는 인물 자체가 경제적 욕심이 없는 매우 소박한 인물이었고, 조금만 돈이 모여도 늘 동포구제와 청년교육 등을 위한 기부 활동에 쏟아 부었다는 증언은 무수히 많다. 이것은 그의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갑부여서라기보다는 변호사라는 직업 덕분이었다.³⁸⁾

36) 柳光烈, 「許憲論」, 40쪽.

37) 허헌의 ‘공소불수리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변은진, 「일제강점기 허헌의 항일변론활동 연구」, 45-56쪽 참조.

38) 『倭政時代人物史料(6)』에는 허헌의 재산이 동산과 부동산을 합해 “3만 엔 정도”로 기록되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변호사란 직업은 상당한 수입을 보장해주었고 이러한 경제적 기반 덕분인지 지역사회의 유지로 대접받았다. 1934년 당시 조선인·일본인을 합한 변호사 317명의 평균 연 수입은 2,896원에 달했으며, 경성의 경우 3,639원이나 되었다. 3,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 보면 월수입이 250원 정도가 된다. 당시 전문직 월급이 의사 100원 이상, 판검사 초봉 100원, 식산은행원 95원, 금융조합 이사 70원, 신문기자 70원, 초등학교원 55원, 목사 50~60원이었다고 하니, 이에 비해 변호사의 평균 수입은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총독부의 사법관들도 퇴직하면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한다.³⁹⁾

처음부터 사법관이 아닌 변호사로 시작한 허헌이 일찍부터 명망을 얻고 있었음은 앞서도 언급한 바다. 물론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무료변론이었고 민사사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어서 1/3 정도는 무료인 게 현실이었다.⁴⁰⁾ 그렇다 해도 허헌은 일반 민사사건도 전국에서 의뢰받고 활동했기 때문에 위에서 본 평균 이상의 수입은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후배 변호사 이인(李仁)의 증언대로 허헌의 주머니에는 돈이 남아날 새가 없었고 세계여행 때 구매한 명품시계는 늘 전당포 신세를 졌다 해도, 식민지 조선이라는 상황에서 허헌과 그 집안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했음은 분명하다.

한편 변론활동 외에도 1920년대 이후 허헌의 사회활동은 교육계를 비롯해 언론계·경제계 등 여러 방면에 걸쳐졌다. 교육·언론계 활동과 경제계 활동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그가 대주주로 참여하거나 거금을

있는데(27쪽), 어느 시점의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

39)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2012, 192-195쪽 ; 전병무,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 유형과 변호사 수입」, 『한국학논총』 제44호, 2015, 332쪽.

40) 李仁, 『半世紀의 證言』, 명지대학출판부, 1974, 74-75쪽.

쾌척한 곳은 대부분 언론·출판 관련 회사 또는 학교나 교육단체들이었다. 대표적으로 한성도서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19년에 설립된 한성도서주식회사는 3.1운동 이후 조선인의 출판·교육·언론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출판기관으로서 만들어져서 다수의 잡지 등을 출판했는데, 허헌은 설립과정에서부터 주주로 참여하여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설립의 주역이었던 장도빈(張道斌)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당시에는 조선인의 발달을 위하여 출판·교육·언론의 세 기관이 필요하다 하여 도서회사·협성학교·조선지광사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위 3개 기관을 다 간섭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은 나의 희생주의로 출생한 작품이었다. 그때 나로 인하여 희생한 동지가 많지만 그 중에 나는 허헌 씨를 잊지 아니한다. 당시 허헌 씨는 우리 유일한 知己之友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힘껏 희생한 이다.⁴¹⁾

장도빈 등의 문화계몽운동에 허헌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장도빈이 말한 ‘희생’의 주된 내용이 바로 사재를 털어 넣은 행위를 말함은 분명하다. 이처럼 허헌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아낌없이 투자한 회사는 평소 그가 관심을 갖고 있던 민족계몽에 관련된 곳이었다. 『동아일보』에 대한 투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허헌은 교육 사업, 특히 청년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길거리에서 학생복을 입은 조선학생을 보기만 해도 반갑고 들뜬 마음이 가득해졌다고 한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학생들에게 “배워라! 힘껏 배워라!”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이다.⁴²⁾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기쁘고 청년들

41) 「만일 내가 다시 20살의 청년이 될 수 있다 하면」(설문), 『東光』 제8호, 1926.12, 17쪽.

42) 『學生』 제2권 1호, 1930.1, 8쪽; 허근욱, 『민족변호사 허헌』, 127쪽.

이 그런 배움을 토대로 장차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벅차올랐을 것이다. 1920~30년대에 『삼천리』에서 수시로 실시한 ‘돈 10만 원이 있다면?’ 등 여러 설문조사에서 허헌이 시종일관 대답한 내용은 바로 ‘교육 사업에 쓰고자’ 한다는 것이었다.⁴³⁾ 민립대학 설립운동, 보성전문학교 분규와 정상화 문제 등과 같은 굵직한 사건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1920년대에 허헌의 교육에 대한 기부 의 일상상은 멈추지 않았다.⁴⁴⁾

또한 개인적으로는 국외로 망명한 지인들의 자식을 보살피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허헌은 해외에서 고생하는 독립운동가의 자식들이 국내에서 공부하고 정착할 때 그 이면에서 이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한 예로 1920년대 초 일본의 외무대신이 노령의 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에게 보낸 기밀문서에 따르면, 이동휘의 아들 이우석(李隅石)과 딸 이경순[李敬榭, 예순(藝榭)이라고도 함]이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헌이 돕고 있었다고 한다.⁴⁵⁾ 1913년 이동휘가 국외로 망명한 뒤 허헌은 줄곧 그 가족과 연락하면서 자식들의 교육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3) 「돈 十萬圓이 있다면?」(설문, 『三千里』 제1호, 1929.6.12., 2쪽 ; 「設問, 債券에 一萬圓이 마저 난다면(이번 報國채권에 선생에게 1등, 1만원이 마저 난다면 그 돈을 무엇에 쓰시려 합니까.)」, 『三千里』 제12권 6호, 1940.6.1., 194쪽.

44) 1924년 8월 8일 ‘조선여자강습후원회」(『朝鮮女子講習後援會』, 『東亞日報』 1924.8.11.), 1925년 2월 1일 조선 아동의 보통학교 입학난 구제를 위한 ‘경성유지 긴급부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入學難救濟府民大會』, 『東亞日報』 1925.2.2.), 1925년 이래 경영난이 심해진 협성학교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 1928년 11월 24일 ‘中東學校 후원회」(『中東學校後援會 第2回定總』, 『東亞日報』 1928.11.29.) 등 1929년 12월 투옥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45) 「機密第16號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1921.2.25.), 「機密第32號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1921.4.19.), 內田康哉(외무대신)→菊地義郎(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西比利亞 11』, 일제당국이 이동휘와 가족 간의 서신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서, 아들 이우석이 경성에서 공부하는데 학자금은 변호사 허헌이 대준다는 보고내용, 딸 이경순의 정선여학교 입학울 허헌이 도왔다는 보고내용이다.

1929년 7월 허헌 집행부가 출범한 뒤 신간회운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제 활동 경비도 대부분 허헌과 김병로가 부담했다고 한다.⁴⁶⁾ 기자 유광렬은 「허헌론」에서 “씨의 금전에 대한 담박한 성격과 사회에 희생하는 노력”으로 인해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을 하던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즈음에는 “씨를 금일의 빈궁에까지 몰아넣고 말았다.”고 서술했다.⁴⁷⁾ 그래서 실제로 ‘민중대회 사건’으로 1929년 12월 허헌이 투옥되면서부터는 가세도 기울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또 다시 변호사직을 제명당했기 때문에 1932년 1월 출옥한 뒤에는 새로운 삶을 모색해야만 했고, 더 이상 항일변호사 허헌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다.

II. 나눔의 지식·경제 공동체 : 형사변호공동연구회

1. ‘나눔의 지식·경제 공동체’ 구상의 배경

법조인으로서 허헌은 일찍부터 공정(公正)과 도덕(道德)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는 “공정은 사회의 생명이니라. 공정이 있어야 사회가 생존하고 공정이 있어야 사회가 진보하나니라.”면서, 조선사회는 오랫동안 공정이 없어서 쇠퇴하고 열패(劣敗)했으니 이제 공정을 회복하여 사회를 생존 진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⁸⁾ 여기서 허헌이 말하는 ‘공정’은 “사회적 정의와 같은 정치적 의미를 뜻한다기보다 개인윤리의 확립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중에는 이를 ‘도덕’이라는 라는 바꾸어 표현했다고 해

46) 전병무, 『항일변호사의 선봉, 김병로』, 역사공간, 2018, 26쪽.

47) 柳光烈, 「許憲論」, 40-41쪽.

48) 許憲, 「公正」, 『서울』 제2호, 1920.2, 38쪽.

석된다.⁴⁹⁾

그는 1920년대 초반의 조선사회를 구 도덕에서 신 도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보면서 조선사회의 당면과제를 새로운 도덕률의 건설로 보고 있었다. “우리는 기독교를 신봉하노니 기독교의 도덕으로 우리 사회를 훈련함이 우리의 희망이라.”라고 하여, 기독교의 윤리로 조선사회의 도덕률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률이라는 것 역시 사회적 도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⁵⁰⁾ 유교적 윤리관과⁵¹⁾ 기독교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허헌의 사상에는 1920년대를 거치면서 민족주의·사회주의 등의 신사상이 일정하게 수용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제강점기에 그가 사회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었고, 이후에도 ‘양심적·진보적 민족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다.

허헌은 강제병합 직전 국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에게 평생 마음의 빛을 안고 살았던 것 같다. 망명 전날 이종호와 함께 허헌의 집을 방문했던 이갑이 ‘뒷일’도 있으니까 허헌은 국내에 남는 게 좋겠다고 했던 말도⁵²⁾ 늘 그의 뒷목을 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갑은 변호사라는 허헌의 직업을 고려하여 항일운동가들의 재판과 그들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로 짐작된다. 그래서인지 허헌은 항일변론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정적인 직업과 축적된 부를 활용하여 항일운동가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열성을 보였다. 그가 이러한 역할을 자임한 데는 사회주의운동을 하던 장녀 허정숙

49) 李昊宰, 『韓國人の國際政治觀』, 法文社, 1994, 453쪽.

50) 「5대가의 시국담」, 『朝鮮之光』 제1호, 1922.11, 14-15쪽.

51) 이인의 증언에 따르면, 후배 변호사들에게 허헌의 모습은 “더없이 인자하면서도 유교적인 예의범절이 엄격한,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진보적인 개방성이 조화된 인품으로 투영”되었다고 한다(허근욱, 「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212쪽).

52) 허근욱, 『민족변호사 허헌』, 109-110쪽.

(許貞淑)과 사위의 영향도 컸다. 함흥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자리를 잡은 1920년대 이후 관철동 허헌의 집은 늘 사회주의운동가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항일운동가들의 주요 은신처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허헌이 본격적으로 ‘나눔의 지식·경제 공동체’를 구상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3.1운동이 이후 급격한 신사상의 전파와 늘어난 ‘사상범’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 치안유지법이 실시되기 전이긴 해도 변호사로서 허헌은 ‘형사 사건’에서 일제 사법당국의 논리를 공박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의 개발이 필요했고, 또 투옥되는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개인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지식과 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뭔가 ‘뜻 있는’ 변호사들이 힘을 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 ‘나눔의 지식·경제 공동체’ 구상을 본격화해갔던 것이다.

이 조직을 만들기 전에 허헌은 이미 여러 변호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 자격으로 국제변호사대회에도 참가했다. 최초의 변호사단체인 1907년의 ‘한성변호사회’를 시작으로 강제병합 이후 조선인 변호사 조직인 ‘경성제2변호사회’, 그 후신인 1920년의 ‘경성조선인변호사회’, 1921년의 ‘조선변호사협회’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허헌을 비롯한 조선인 변호사들이 항일운동가들을 위해 자진해서 무료변론을 하면서 공동의 대응논리를 세워갔던 배경에는, 이러한 조선인 변호사단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변호사협회의 설립에 대해 『동아일보』에서 법률은 “민중의 양심에서 나오는 여론을 형식화한 것”으로서 “사회적 양심이 곧 법률”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하고 이에 배치되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날카롭게 단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공인으로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켰다. 예를 들어 1924년 악명 높은 '희천서 고문사건'이 발생하자⁵³⁾ 조선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항일 열기를 고취시켰으며, 1925년 7월 공덕동 방면에 수해가 나서 고아들이 다수 발생하자 허헌은 조선변호사협회 이름으로 자택에 23명의 고아들을 임시 수용하기도 했다.⁵⁴⁾ 이처럼 실제로 조선변호사협회는 늘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선두에는 늘 변호사 허헌이 있었다.

이와 같은 변호사단체 활동을 통해 허헌은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런데 허헌에게 직접적으로 사상사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은 아마도 1922년 11월의 '신생활사 필화사건'이었던 것 같다.⁵⁵⁾ 일제당국의 언론탄압 사건인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관련 재판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허헌 등 변호사들은 두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나는 언론계나 법조계의 유지들과 함께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는 것이었으며,⁵⁶⁾ 다른 하나는 공동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었다.⁵⁷⁾ 허헌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꼼꼼하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추궁했으나, 끝내 관련자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잡지 『신생활』은 폐간되었다.

53) 1919년 평북 熙川郡의 비밀결사 天摩山隊의 후계조직으로 獨立靑年團이 결성되어 1923년 9월 경찰관주재소나 면사무소 등을 공격하고 일본인 순사를 처단하는 활동을 전개했는데, 교전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가 사살되는 등으로 번지자 희천경찰서에서는 검거된 조선인에게 극심한 고문을 가해 고문치사가 발생하는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다.

54) 「辯護士會收容 少女二名去處不短」, 『東亞日報』 1925.7.24.

55) 1922년 11월 朴熙道 등이 발간한 사회주의 계통의 월간지 『新生活』이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호를 발간하면서 관련 기사를 실었다가, 관련자 다수가 구속되고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56) 「言論의 擁護를決議, 법조계와 언론계가 연합하여」, 『東亞日報』 1922.11.29.; 「當局의 言論壓迫과 民衆의 輿論激昂(言論의 擁護를 協同決議한 法曹界와 言論界)」, 『開闢』 제30호, 1922.12, 90쪽.

57) 「機械全部押収는 無理, 許憲氏가 證人訊問을 申請」, 『朝鮮日報』 1923.1.9.

이러한 ‘실패’를 계기로 허헌은 ‘사상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논리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더 가혹해진 고문 취조에 시달리는 사상범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 늘어갈 ‘사상사건’ 등에 대한 변론은 사상적 스펙트럼이 넓은 조선변호사협회에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변호사들 가운데는 사상사건이라면 아예 회피하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이다.⁵⁸⁾ 그래서 1923년 1월 ‘신생활 필화사건’이 종결되자마자 허헌은 ‘나눔의 지식 · 경제 공동체’ 즉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현실화시켰다.

2.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설립과 활동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설립과 이후의 활동은 ‘인권변호사-항일변호사-사상변호사’로서 허헌의 정체성과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연구회는 조선변호사협회만으로는 모두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사상사건의 변론과 지원에 한계를 느낀 허헌이 1923년 후배 변호사 김병로 · 김태영(金泰榮) · 이승우(李升雨) · 김용무(金用茂) 등과 함께 조직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직이 탄생되고 유지된 것은 제일 선배이기도 했던 허헌의 기획과 의지, 자기희생과 추진력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체화한 ‘나눔’의 방식을 식민지 조선의 합법영역 내에서 근대적인 형태로 재현해보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형사변호공동연구회가 결성된 배경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1920년대 항일운동의 정세변화로 인해 변론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 다수가 ‘사상사건’으로 취급되었던 만큼, 이에 대처하

58) 변호사 이인은 “변협이 좀 더 과감하게 투쟁에 나섰더라면 우리의 역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표명한 바 있다(이인, 『반세기의 증언』, 77쪽).

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법리를 연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허울뿐인 '문화정치'로의 전환 이면에서 일제당국의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탄압, 검거 후 취조과정에서의 고문 억압은 더욱 심각해졌고,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으로 이들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활동 역시 철저하게 이 두 측면에 집중되었다. 첫 번째 필요성에 따라 '나눔의 지식공동체 - 공동의 법리 연구와 대응'을, 두 번째 필요성에 따라 '나눔의 경제공동체 - 무료변론과 경제적 지원'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 연구회의 설립과 변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일본의 자유법조단(自由法曹団)을 모델로 했던 것 같다. 자유법조단은 1921년 고베[神戸]의 노동쟁의 탄압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조사단을 계기로 성립된 변호사단체로서, 오늘날까지 같은 이름으로(약칭 JLAF)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⁵⁹⁾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서는 필요시 자유법조단 소속의 일본인 인권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해 이들을 재판에 합류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변호사는 이미 1912년 '105인 사건' 재판, 1919년 3.1운동 재판에도 다수가 참여한 바 있고, '조선공산당 사건' 등 사상사건이 많은 1920년대에는 일본의 법체계에 정통한 이들의 경험을 더욱 필요로 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형사공동연구회'라고 쓰고 있고 그 설립시기에 대해서도 1923년과 1926년 등으로 분분하다.⁶⁰⁾ 하지만 설립 시기는 첫 광고를 게재한 1923년 2월 19일 이

59) 自由法曹団(JLAF) 홈페이지(<http://www.jlaf.jp/index.html>)의 소개란 참조. 영어명은 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JLAF)이다.

60) 한인섭은 “형사공동연구회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양 견해가 있는데,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면 창립자(김병로-인용자)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명칭은 ‘형사공동연구회’

전이며, 정식명칭이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음은 분명하다. 또 참여 명단이 흔히 허헌·김병로·이인·권승렬·이창휘 등 5인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이다. 연구회가 창립된 1923년부터 1926년 사이에 적어도 이인·권승렬·이창휘는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인 등이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 참여한 것은 형사공동연구회로 개칭된 후인 1926년 4월 이후였다. 이인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와(조선변호사협회와—인용자) 별도로 우리는 자유법조단을 조직하기도 했다.”고 하여, 단체의 명칭을 정확히 하지 않고 그냥 일본의 단체와 같은 자유법조단이라고 칭한 것⁶¹⁾ 역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인의 회고에서도 이 연구회가 자유법조단과 유사한 취지로 만들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동아일보』에 총 11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한 게 확인된다. 이 가운데 아홉 차례는 설립 직후인 1923년 2~3월에 집중되었다. 나머지는 1924년 1월과 1926년 4월에 각 한 번씩인데, 마지막 것만 ‘형사공동연구회’ 명의로 게재했다. 이로 미루어 보면 1926년 4월 이전에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항목명은 형사공동연구회이지만 “정확한 이름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라고 서술하고 있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취지는 “한 사람에 대한 보수로 5명이 공동 연구

로 정리한다. 연구회는 ‘사상범 원호를 목적으로 한 결사’였다”고 했다(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209쪽). 전병무는 ‘형사공동연구회’로 쓰면서, 1926~1927년 전후로 보는 서용태의 견해에 따른다고 했다(전병무, 「일제하 항일변호사 이창휘의 생애와 활동」, 『한국학논총』 제46호, 2016, 349~350쪽).

61) 이인, 반세기의 증언, 76쪽. 한편 “(1925년 4월) 상춘원(常春苑—園의 오기)에서 열린 전국기자대회를 탄압한 일경이 관련자 105인을 극심하게 고문한 것을 응징하고자” 자유법조단이 조직되었다고 쓴 경우도 있는데(김이조, 「일제 강점기의 변호사」, 『애산학보』 제35호, 2009, 42~43쪽), 이 역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하여 변호"하는 것이었으며, 조선-일본 법조인들의 공동전선에도 목적이 있었다. 명칭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어도 실제로는 법정투쟁을 통해 조선인 항일민족운동의 무죄를 주장하고 형무소에 구금된 동지들에게 사식(私食)을 넣어 주고 유족을 돌보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의 후원단체 역할을 자임했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운동에서의 모플(Mopr) 즉 적색구원회(赤色救援會)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본공산당이 정식으로 '해방운동학생자구원운동 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건 1927년 하순경이므로⁶²⁾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항일운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걸 수 없던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형사변호공동연구회라는 이름을 내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서는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변호를 의뢰하였다. 처음에는 “형사사건에 한하여 1인에 대한 보수로 5인이 공동 연구하여 변호 의뢰에 응함”이라고 했으며, 나중에는 “형사에 관하여 공동연합으로 1인에 대한 보수로써 2인 이상이 출정변호”한다고 게재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항일운동 사건에 대해 1인의 수입료로 허헌·김태영·김병로·이승우·김용무 5인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된 뒤부터는 2인 이상이 출정 변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924년 1월 1일 광고부터는 항일운동 변론에 흥미를 잃기 시작한 이승우가 빠지고 새로 이종성(李宗聖)이 합류하였다. 연구회의 구성원은 대체로 5인으로 유지하면서, 관련 재판에 경험이 많은 조선인이나 일본인 변호사와 공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가 처음 발족했을 때는 인사동 75번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범했다. 그런데 1924년 1월 광고부터는 사무실이 관

62) 瀧澤一郎, 『日本赤色救援會史』, 日本評論社, 1993, 21쪽.

철동 119번지 즉 허헌의 변호사 사무실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사무실 유지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허헌이 자신의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과 모든 광고에서 허헌의 이름이 가장 앞에 등장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실질적으로 그가 회장 역할을 맡아 운영을 주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창립 이후 이른바 정의부(正義府)의 연통제(聯通制) 사건, 김상옥(金相玉) 사건, 6.10만세운동 사건, 조선공산당 사건, 광주학생운동 사건, 원산총파업 사건, 안창호(安昌浩)·여운형(呂運亨) 등 주요 항일운동가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간도공산당 사건 등의 변론에 관여했다. 국내와 국외,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항일운동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공동으로 연구해 대응했다.⁶³⁾

특히 조선인과 일본인을 합해 변호인단만 28명에 달했던 ‘조선공산당 사건(1~2차 탄압 병합)’의 경우 총 역량을 결집해 대응했다. 당시 일본인 변호사들과 조직적으로 연대하며 대처하는 모습도 돋보였다. 공동변호인단은 4개월에 걸친 재판을 무보수로 노력하면서 가능한 모든 법정투쟁의 기법을 동원해 끈질기게 공판투쟁을 벌였다. 이들의 법정투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타이완 등 각계 사회단체와 민중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있었다. 대부분의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언론도 최대한 상세히 보도하려고 노력했다.⁶⁴⁾

63) 현재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자세한 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그 활동을 자세히 보려면 멤버인 변호사 5인이 참여했던 시기 각 항일운동 변론활동의 내용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면관계상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1920년대 허헌이 변론한 항일운동 및 사상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은진, 「일제강점기 허헌의 항일변론 활동 연구」, 56-80쪽 참조.

64) 자세한 내용은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316-387쪽 참조.

이처럼 일제강점기 항일법정투쟁의 이면에는 늘 허헌이 주도한 형사변호공동연구회가 자리 잡고 있었고, '항일변론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팀워크는 “항일변론을 조직화하고 장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적 유대를 만들고 물질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지대”하다고 평가된다.⁶⁵⁾

한편 허헌은 감옥에 있는 '사상범'들을 수시로 면회하여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살뜰히 보살핀 것으로도 특히 유명했다. 출옥한 뒤 1925년에 『동아일보』에 「철창회고(鐵窓回顧)」를 연재한 이봉수(李鳳洙)는 허헌의 면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허헌 선생의 두 차례의 면회는 참으로 무한한 위안을 주더이다. 첫 번째는 11월 14일이었는데 선생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 하는 중에 비록 사건의 내용은 말하지 못할지라도 선생의 염려 말라는 말 한마디는 확실히 萬金의 가치 있는 위안을 주더이다. 그 다음 1월 13일에 오셨을 때에 예심판사가 갈려서 그 사이에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던 말은 그 후 예심기간 갇힐 때에 낙심되는 나로 하여금 많은 원기를 내게 하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수가 문을 열고 '면회'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출옥'이라는 말의 절반만큼의 기쁨은 확실히 주더이다.⁶⁶⁾

‘민중대회 사건’으로 1929년 12월 허헌을 비롯한 다수의 변호사가 고초를 겪으면서 형사공동연구회 활동도 한때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김병로에 따르면 허헌이 출옥한 뒤인 1932년 1월부터 다시 ‘김병로·이인의 합동변호사사무실 시대’가 열려서 자연스레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정식 모임은 거의 하지 못했다 해도, 형사공동연구회라는 명목은 1930년대

65) 위의 책, 211쪽.

66) 李鳳洙, 「鐵窓回顧(5)」, 『東亞日報』 1925.7.21.

후반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⁶⁷⁾ 물론 이때는 허헌이 변호사로 여기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맺음말

이상에서 일제강점기에 ‘인권변호사·항일변호사·사상변호사’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허헌이라는 인물을 통해, 식민지 사회에서의 ‘나눔’의 문제에 접근해보았다. 1885년 함경도 산간벽촌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를 목표로 한학과 유교문화를 습득한 뒤 근대적인 신학문을 공부한 허헌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도덕률과 근대적인 서구문화 및 기독교의 도덕률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개인의 부의 축적과 ‘나눔’을 철저히 하게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실천한 데에는, 전자 즉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습득과 일제의 강점이라는 상황이 컸던 것 같다.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1호 변호사가 된 허헌은 바로 ‘최초의 제명 징계’를 당하는 등 처음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일제강점과 3.1운동을 거치면서 항일변호사의 선봉에 섰고, 이후 일제의 사상탄압에 맞서는 사상변호사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그가 변호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청년교육과 각종 기부,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무료변론과 옥바라지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와 같이 ‘나눔’의 일상을 지속하면서, 그는 이를 식민지 조선의 합법영역 내에서 근대적인 형태로 재현해보려 했다. 그 결과 ‘나눔의 지식·경제 공동체’라 할 수 있는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조직하기

67)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211쪽 ; 한인섭, 『가인 김병로』, 박영사, 2017, 157-158쪽.

에 이르렀다.

1923년 초 형사변호공동연구회가 결성된 배경은 첫째, 1920년대 항일운동의 정세변화로 인해 '사상사건'과 '사상범'이 늘어난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둘째, 일제당국의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항일운동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경제적 지원에 있었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활동 역시 철저히 이 두 측면에 집중되었다. 첫 번째 필요에 따라 '나눔의 지식공동체 - 공동의 법리 연구와 대응'을, 두 번째 필요에 따라 '나눔의 경제공동체 - 무료변론과 경제적 지원'을 구체화하여 활동했다. 이러한 활동은 김병로 등 뜻 맞는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추진한 것이었으나 언제나 허헌이 그 중심점 역할을 했다.

(논문투고: 2020.7.17, 심사완료: 2020.8.19, 게재확정: 2020.8.19.)

참고문헌

〈자료〉

- 許憲, 「奇書」, 『皇城新聞』 1903.2.14
- 許憲, 「爲民者 不可不知法律」, 『法政學界』 제6호, 普專校友會, 1907.10
- 「要視察韓國人之來神戶就テ(柳春吉・李月松・許兢人の 神戸 來着)」, 兵庫縣知事, 1909.4, 『要視察韓國人舉動 3』
- 許憲, 「公正」, 『서울』 제2호, 1920.2
- 「機密第16號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1921.2.25.) 및 「機密第32號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1921.4.19), 內田康哉,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西比利亞 11』
- 「5대가의 시국담」, 『朝鮮之光』 제1호, 1922.11
- 「當局의 言論壓迫과 民衆의 輿論激昂」 『開闢』 제30호, 1922.12
- 「만일 내가 다시 20살의 청년이 될 수 있다 하면」, 『東光』 제8호, 1926.12
- 「돈 十萬圓이 있다면?」, 『三千里』 제1호, 1929.6
- 「交叉點」, 『三千里』 제17호, 1931.7
- 鄭寶榮(許憲夫人), 「男便을 獄中에 보내고, 嚴冬바람을 압두고」, 『三千里』 제3권 11호, 1931.11
- 柳光烈, 「許憲論」(「登場한 二人物」중에서), 『三千里』 제4권 8호, 1932.8
- 許憲, 「交友錄」, 『三千里』 제7권 7호, 1935.8
- 「天下大小人物評論會」, 『三千里』 제8권 1호, 1936.1
- 「緣分泰平記(下)」, 『野談』 제4권 7호, 1938.7
- 「設問, 債券에 一萬圓이 마저 난다면」, 『三千里』 제12권 6호, 1940.6
- 『倭政時代人物史料(6)』(許憲)
- 『高宗實錄』, 『大韓每日申報』, 『大韓帝國官報』, 『東亞日報』 등의 관련기사

〈연구서〉

-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100년사』 I,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2 - 국권수호운동 II』, 1987

-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아카넷, 2016
- 瀧澤一郎, 『日本赤色救援會史』, 日本評論社, 1993
- 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한국인권변론사』, 두레, 2003
-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의 이념』, 태학사, 2015
- 심지연, 『허헌 연구』, 역사비평사, 1994
- 李仁, 『半世紀의 證言』, 명지대학출판부, 1974
- 李昊宰, 『韓國人の 國際政治觀』, 法文社, 1994
-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2012
- _____, 『항일변호사의 선봉 김병로』, 역사공간, 2018
-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 _____, 『가인 김병로』, 박영사, 2017
- 허근옥, 『민족변호사 허헌』, 지혜네, 2001
- 허영옥, 『나의 아버지 허헌』, 평양출판사, 2015

〈연구논문〉

- 김이조, 「일제 강점기의 변호사」, 『애산학보』 제35호, 2009
- 김일환, 「현대사회와 유교의 사회적 덕목 - 충서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2호, 2008
- 김효전, 「허헌과 변호사 징계」,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0
- 변은진, 「虢人 許憲의 성장과정과 한말 변론활동 연구」, 『사학연구』 제130호, 2018
- _____, 「일제강점기 허헌의 항일변론활동 연구」, 『애산학보』 제47호, 2020
- 서신혜,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 『기독교사회윤리』 제26호, 2013
- 손경찬, 「한국 변호사제도의 기원과 의의」, 『법학논고』 제33호, 2016
- 송양섭, 「18세기 '公' 담론의 구조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 『역사와현실』 제93호, 2014
- 이균영, 「김철수 친필유고(1970~1973년경 작성)」, 『역사비평』 제7호, 1989
- 李賢周, 「社會革命黨과 '上海派 内地部'에 관한 연구(1920~1922)」, 『한국학연구』 제11호, 2000
- 전병무,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 유형과 변호사 수입」, 『한국학논총』 제44호, 2015
- _____, 「일제하 항일변호사 이창휘의 생애와 활동」, 『한국학논총』 제46호, 2016

제정관, 「한국전통의 선비정신과 현대적 전승 :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72호, 2009

최주희, 「18세기 국가재정의 公共性 재고」, 『朝鮮時代史學報』 제76호, 2016

허근욱, 「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 제28호, 1994

[ABSTRACT]

**'Sharing' everyday by Anti-Japanese Lawyer Heo Heon
and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 Colonial society and Recoding of Confucian culture**

Byun, Eun-jin

This is a paper that examines the problem of 'Sharing' in colonial society through lawyer Heo Heon. Heo Heon was a symbol of 'human rights lawyers and anti-Japanese lawyer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e was born in 1885 in the Yangban family in a mountain village of Hamgyeong-do, studied Confucianism and Confucian culture with the goal of passing Gwageo, studied modern studies. So he had both the morality of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and that of modern Western culture and Christianity. He recognized and practiced individual wealth and sharing as socially. He was known for using most of his lawyers' income for youth education, various contributions(donations), free pleadings and financial support for anti-Japanese activists and their family. In 1923, he organized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a knowledge and economic community of sharing. The background was firstly in the joint response to the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Ideological offenders' increased in the 1920s, and secondly, comfort and economic support to anti-Japanese activists and their families suffering from oppression by Japanese authorities. The activities of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were also concentrated on these two aspects. According to the first need, 'knowledge community of sharing: Joint Legal Research and Response' and the second need, 'economic community of sharing: pro bono and economic support'.

Key Words : Heo Heon, Sharing, Donation, Contribution,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Anti-Japanese Lawyer, Human rights lawyer, pro bono
